

제344회 정례회  
2015.12.16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장선배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4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5일

3. 제정이유
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교육·홍보와 다각적 시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(안 제2조)
- 나.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확대 노력 규정 (안 제4조)
  - 충청북도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/100으로 하되, 전체 공무원 정원의 5/100까지, 지방공기업등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5/100까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.
- 다. 도지사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 및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함. (안 제6조)
- 라.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·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. 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함)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것으로,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음.
  
- 제정 조례안은
  - 법에 따라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됨.
  
  - 다만, 안 제4조제1항에서, 장애인 고용에 있어,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률<sup>1)</sup>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고,
  
  - 안 제4조제2항에서,  
“도지사는 ~ 장애인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공기업등도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는 바,
  
  -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상향하고(공무원, 지방공기업등 5%),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훈시적 규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조치이자,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

---

1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12.27>

제28조의2(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) 제28조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공공기관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장·제4장·제4장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, 지방공단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·출연법인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.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<개정 2012.12.18>

하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바,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참고로, 동 조례안과 유사조례를 제정한 11개 시·도 중 8개 지역이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에 대한 혼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.

※ 타 시·도 조례 상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

지역명	장애인 고용비율 확대 규정
서울, 인천, 광주, 제주(4)	공무원 6/100, 지방공기업등 5/100
부산, 대구, 경북, 전남(4)	공무원 5/100, 지방공기업등 5/100

- 내용 측면에서도

- 안 제5조에서 매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파악하고, 그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,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노력을 규정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을 통한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

-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, 장애인이 자활·자립을 하는데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임.